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4. 1. 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125,232	83,478
2급(상당) 공무원	115,739	77,122
3급(상당) 공무원	107,598	72,279
4급(상당) 공무원	98,431	57,211
5급(상당) 공무원	81,159	38,73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4,18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3,58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107,598	53,585
전문관 공무원	81,159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4,839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16,331	38,738
지도관 공무원	107,556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소방정감 공무원	125,232	83,478
치안감·소방감 공무원	115,739	77,122
경무관·소방준감 공무원	107,598	72,279
총경·소방정 공무원	98,431	59,353
경정·소방령 공무원	81,159	40,797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41,14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9,469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14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683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986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122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7,989	50,012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868	38,729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4,651	31,025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175	25,274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5,548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65,346
나	81,239	54,132
다	66,396	47,157
라	58,248	41,551
마	51,290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